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 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05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증권거래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보고”)를 “(혐의거래의 보고 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플로피디스크”를 “전자기록매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지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

제16093호

관

부

2005. 9. 27. (화요일)

다)”로 한다.

제8조중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제8조의3(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기관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5조 본문”을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법 제5조 각호”를 “법 제5조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연합회에 한한다)”를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③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의5(고객주의의무의 절차 등)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고객주의의무에 관한 참고유형의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관세청장”을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동조제5항 각호”를 “동조제5항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항·동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따르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336호, 2005. 1.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 의무제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등(영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신설 및 영 부칙 제2항)

- (1) 금융기관등이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보고기준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되, 동 보고기준금액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는 3천만원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원으로 함.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영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 신설)

- (1)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 금융기관등은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원화 2천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의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함.
- (3)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고객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외국 선진금융기관의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